



제 안 설 명

□ 고령군 - 베트남 타이빈성 · 박장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고 령 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 성 필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 베트남 타이빈성 및 박장성 MOU(양해각서) 체결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U(양해각서)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은 2024년 397명의 근로자가 입국을 했으며, 올해는 수요조사 결과 58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에 맞게 도입지자체를 다변화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베트남의 두 개 성은 작년에 처음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 수요 증대에 대비 하고, 특히 늘어나는 딸기 농가 및 토마토 농가에 맞는

베트남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것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 ①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지침에 따른 업무 협약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 ②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이행조항 등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 베트남 타이번성 및 박장성 MOU(양해각서) 체결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일

농업정책과장 김 성 필



**Agreement on agricultural exchange
between Goryeong-gu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unicipality of THAI BINH of the Vietnam**

제1조. 목적

Article 1. purpose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와 베트남 타이빈성(박장성) (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 (아래에서는 "고령군"이라 칭함)
2. 베트남 타이빈성(박장성)(아래에서는 "타이빈성(박장성)"라 칭함)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5개월 동안 고령군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 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 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

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한다.
-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등 기본 비용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 (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 ②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 ③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경상북도 고령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마. 고령군은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사. 부속합의서의 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베트남 타이빈성(박장성)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고령군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라. 고령군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베트남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여행자보험,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 마. 고령군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타이빈성(박장성)과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① 타이빈성(박장성)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타이빈성

(박장성)은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②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③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7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고령군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자. 계절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교육한다.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카. 고령군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

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고령군 및 2025년 월 일 **베트남** 타이빈성(박장성)에서 체결되며, 베트남어와 영어,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수

베트남 타이빈(박장)성
타이빈(박장)성인민위원외 위원장

이남철/Lee Nam Chul

팜응옥케 PHAM NGOC KE
